



제 8 장

공 증 제 도



제8장 공증제도¹²

1. 개 요

공증은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이다.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을 공증 받을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 유리하다. 이러한 분쟁 예방적 기능 외에도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여기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미리 승낙하면 판결처럼 집행력을 부여 받아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능도 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인가공증인) 또는 임명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 할 수 있다.

2. 연 혁

우리나라 공증제도는 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吏典) 매매한조(賣買限條)의 입안(立案)에서 유래된 것으로, 경술국치 후 일본에 의하여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로 조선민사령이 제정되어 ‘공증인의 직무를 재판소 서기가 행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다음해인 1913년 3월 17일 제령 제13호로 조선공증령이 제정되어 동년 5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면서 비로소 전문직인 공증인 제도가 생겼고, 일본의 공증인법(1908년 4월 법률 제53호)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현행 공증인법은 1961년 9월 23일 법률 제723호로 제정·공포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위 조선공증령과 일본 공증인법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있었던 구 법령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공증인법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구 법령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공증사무를 감독하는 관청이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바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공증인법 제정·실시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국 공증인 수가 불과 10인 정도로 공증제도의 이용은 아주 미미하였다.

¹² 「공증실무」(대한공증협회, 2008)와 법무연감(법무부, 2009)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1970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제정(1971년 시행)·공포되면서 변호사들의 조합체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라는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였고, 아울러 어음·수표의 공증제도, 법인 의사록의 공증 의무화 등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공증제도의 이용이 매우 활발해졌다. 또한 제도면에서도 종래에 임명공증인의 전임(專任)공증인만 있었다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형태로 변호사가 공증을 하는 일종의 겸업공증인이 생기게 되어, 한국의 공증제도는 전임공증인과 겸업공증인의 이원(二元)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¹³.

이후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594호로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법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어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자격으로 공증업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무부가 법무법인 제도를 신설하면서 특별한 유인 요소가 없으면 변호사들이 종래의 단독 사무소 선호 성향으로 법인 설립신청이 저조할 것을 염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받으면 공증사무소 설치신고만으로 공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주된 공증업무 집행자는 임명공증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변호사, 공증인가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의 삼원(三元)제도로 확장되었다¹⁴.

그러나 위와 같은 삼원(三元)제도는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된 변호사법에 의해 다시 2원체제로 환원되었다. 동법이 5년 이상 법조경력자인 구성원 변호사만이 공증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면서 기존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전에 인가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해산 시까지 계속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¹³ 이재성, “공증제도개설”, 『법조』 24-4·5, 법조협회, 1975, 479~481면; 윤종섭, “공증겸무변호사단체의 발전과정과 전망”, 『인권과 정의』 124, 대한변호사협회, 1986, 45~50면; 앞의 논문, 152~153면; 윤종섭, “변호사겸업공증제도창설 30주년”, 『인권과 정의』 232, 대한변호사협회, 2000, 84~85면; 김상영, “한국공증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215~252면.

¹⁴ 윤종섭, “한국공증제도개관”, 『인권과 정의』 149, 대한변호사협회, 1989, 101면.

3. 최근 개정한 공증인법의 내용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16호로 개정 공증인법이 공포되었다.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동법은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며,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선서인증 등 새로운 공증제도 도입

(1) 선서인증 제도 도입

종래의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정 성립을 증명할 뿐 그 증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까지 보증해 주지는 못하였는바, 사서증서 성립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해 주는 선서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전자공증 제도 도입

정보기술의 발달로 많은 양의 문서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통용되고 있고, 특히 상업등기법이 제정되어 상업등기의 전자신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으로 작성된 정관과 사서증서 등 전자문서에 공증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2) 공증사무의 신뢰성·적정성 제고

(1)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

종래 법무법인 등의 공증담당변호사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에, 임명공증인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에 규정되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요건, 정년 등을 공증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였다.

(2) 공증인의 임명·인가기준 강화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하고, 정년을 75세로 규정하는 한편,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년에 관한 규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 예정)

(3) 공증인 징계 강화 및 교육 체계화

공증인 징계를 강화하여 현재 100만 원인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공증인으로 최초 임명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 법무부가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강제가입단체로 전환된 대한공증인협회로 하여금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증담당변호사와 사무보조자 등 공증사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였다.

(4)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 도입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를 도입하여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임명·인가공증인의 정원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지방검찰청별 소속 공증인 정원(개정 전후 비교)]

지방검찰청	종전 규정	개정 정원 규정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서울중앙지검	10	12	89
서울동부지검	3	3	3
서울남부지검	3	4	7
서울북부지검	3	3	2
서울서부지검	3	3	2
의정부지검	3	3	6
인천지검	5	6	9
수원지검	5	10	17
춘천지검	3	3	2
청주지검	3	3	3
대전지검	5	5	8
대구지검	7	7	9
부산지검	7	7	11
울산지검	3	3	2
창원지검	4	4	5
광주지검	4	6	9
전주지검	3	3	4
제주지검	1	1	2

* 다만, 2010년 2월 7일 이전에 인가를 받고 공증사무를 취급 중인 법무법인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 정원제 도입 이후에도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4. 공정업무의 주요 내용

1) 공정증서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사인(私人)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법에 따라 법률행위 기타 사건(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한다.

공정증서에는 법률행위 공정증서, 어음·수표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가 있는바, 법률행위 공정증서는 소비대차, 임대차, 채권양도, 매매, 증여계약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어음·수표 공정증서는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로서 이에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력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유언 공정증서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인 2인을 참여시켜 유언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다.

2) 인증

인증이란 사인이 작성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 그 문서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에는 사서증서 인증(사인이 작성한 각종 계약서, 위임장, 보증서, 위임장, 초청장 등에 관한 확인), 정관 인증(회사 설립 시의 정관을 확인), 의사록 인증(회사 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이 있다.

3) 공증문서 보관

공증서류는 공증인 사무소 소속의 보관창고에 보전하는데, 그 보존기간은 증서원부의 경우 25년,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으로 그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5. 공증기관

1) 임명공증인

공증사무를 담당·처리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그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이어야 하고, 임기는 최초 임명 시 5년이며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년 임기로 재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75세 정년제이다.

임명공증인은 공증업무를 담당·처리하는 한도 내에서 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되나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공증수수료의 수입만으로 사무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정원은 각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마다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사무소는 2인 이상의 공증인이 모여 공증인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인가공증인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사무 취급인가를 받으면 법인 명의로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공증업무 담당 변호사는 구성원으로서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이어야 한다.

3) 공증인 수

(1) 개정 공증인법에 따른 2010년 공증인 수

[2010년 6월 말 기준]

소속 검찰청	공증인		인가공증인				대행정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계	
서울중앙지검	12	6	89	124	28	152	
서울동부지검	3	2	3	9	0	9	
서울남부지검	4	0	7	17	2	19	
서울북부지검	3	0	2	7	0	7	
서울서부지검	3	2	2	7	1	8	
의정부지검	3	1	6	13	0	13	
인천지검	6	0	9	23	1	24	
수원지검	10	6	17	37	1	38	
춘천지검	3	1	2	2	1	3	2
대전지검	5	2	8	8	1	9	2
청주지검	3	2	3	8	0	8	1
대구지검	7	3	9	14	6	20	3
부산지검	7	2	11	12	7	19	
울산지검	3	2	2	7	0	7	
창원지검	4	3	5	8	0	8	2
광주지검	6	2	9	10	6	16	2
전주지검	3	0	4	4	2	6	2
제주지검	1	1	2	1	1	2	
계	86	35	190	311	57	368	14

【출처】 법무부

(2) 구 공증인법에 따른 2010년 이전 공증인 수 추이

[매년 말 기준]

연도	임명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대행청
		사무소	구성원	사무소	구성원	
1999	12	136	788	80	355	16
2000	13	161	943	78	348	15
2001	16	172	1,003	76	326	14
2002	15	193	1,110	76	317	14
2003	21	207	1,260	75	312	14
2004	24	223	1,389	72	297	14
2005	29	242	1,546	70	312	14
2006	30	256	1,722	68	298	14
2007	30	282	1,917	67	288	13
2008	33	295	2,089	64	273	13
2009	34	309	2,209	62	260	13

【출처】 2009 법무연감 · 법무부 법무과

6. 공증사무 처리 현황

[단위 : 원]

연도 \ 구분	처리건수 *	가액
1999	3,277,442	30,358,693,968,621
2000	3,440,208	38,416,829,511,505
2001	3,553,651	37,185,829,511,505
2002	3,988,234	46,623,278,453,465
2003	7,198,097	75,814,716,536,873
2004	3,637,051	70,206,071,853,069
2005	3,654,058	61,117,672,922,344
2006	3,620,631	78,991,376,920,882
2007	4,046,816	70,418,852,024,266
2008	4,258,090	59,563,370,695,375
2009	3,698,260	51,431,095,953,031

【출처】 2009 법무연감 · 법무부 법무과

* 공정증서, 정관, 의사록,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 등 전체 공증사건 수